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소관부서 : 자치행정과

제정 1998. 10. 19	규칙 제136호	일부개정 2018. 9. 7	규칙 제632호
개정 1999. 3. 5	규칙 제151호	일부개정 2018. 12. 12	규칙 제640호
개정 1999. 9. 20	규칙 제178호	전부개정 2019. 1. 1	규칙 제645호
개정 2000. 7. 28	규칙 제203호		(제명개정)
개정 2001. 3. 7	규칙 제213호	일부개정 2019. 3. 8	규칙 제647호
개정 2001. 12. 6	규칙 제234호	일부개정 2019. 8. 12	규칙 제657호
개정 2002. 4. 4	규칙 제237호	일부개정 2019. 10. 29	규칙 제661호
개정 2002. 7. 15	규칙 제241호	일부개정 2020. 5. 8	규칙 제673호
개정 2002. 10. 28	규칙 제249호	일부개정 2020. 7. 28	규칙 제681호
개정 2003. 1. 2	규칙 제253호	일부개정 2020. 9. 30	규칙 제684호
개정 2003. 2. 17	규칙 제256호		(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개정 2004. 1. 10	규칙 제270호	일부개정 2020. 11. 13	규칙 제687호
개정 2004. 7. 23	규칙 제279호	일부개정 2020. 12. 29	규칙 제691호
개정 2004. 11. 24	규칙 제283호	일부개정 2021. 11. 5	규칙 제721호
개정 2005. 3. 5	규칙 제299호	일부개정 2021. 12. 28	규칙 제723호
개정 2005. 6. 1	규칙 제303호	일부개정 2022. 3. 7	규칙 제726호
개정 2005. 9. 21	규칙 제317호	일부개정 2022. 4. 22	규칙 제729호
개정 2006. 1. 3	규칙 제325호	일부개정 2022. 8. 11	규칙 제730호
개정 2006. 4. 17	규칙 제331호	일부개정 2022. 9. 5	규칙 제735호
개정 2006. 11. 16	규칙 제341호	일부개정 2022. 9. 30	규칙 제736호
개정 2007. 7. 2	규칙 제357호		(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)
개정 2008. 7. 25	규칙 제374호	일부개정 2023. 3. 6	규칙 제743호
개정 2009. 3. 31	규칙 제390호	일부개정 2023. 11. 1	규칙 제760호
일부개정 2011. 1. 11	규칙 제438호	일부개정 2023. 12. 13	규칙 제762호
일부개정 2012. 3. 14	규칙 제453호	일부개정 2024. 4. 1	규칙 제769호
일부개정 2012. 7. 11	규칙 제463호	일부개정 2024. 7. 1	규칙 제772호
일부개정 2013. 5. 6	규칙 제478호	일부개정 2024. 9. 20	규칙 제776호
일부개정 2013. 10. 1	규칙 제487호	일부개정 2024. 12. 26	규칙 제781호
일부개정 2014. 12. 31	규칙 제541호		
일부개정 2016. 7. 5	규칙 제587호		
일부개정 2017. 12. 28	규칙 제615호		
일부개정 2018. 3. 28	규칙 제619호	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」 제2조에 따라 이천시 본청의 국장, 담당관·과·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담당관·과·소와 읍

· 면·동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직무) 담당관은 부시장을 보좌하고, 과장은 국·소장을 보좌하며, 담당관·과·소장은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 <개정 2020·12·29>

제3조(분장사무) ① 각 소속기관별 분장 사무는 별표 1과 같다. <개정 2022·9·5, 2024·7·1>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의 성질 또는 내용이 2개 이상의 국·소와 관련되어 그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시장이 사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국·소 내에서의 불분명한 사무에 대하여는 해당 국·소장이 별도로 소관부서를 지정한다. <신설 2022·9·5>

제2장 시 본청

제4조(보좌기관) 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감사법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정보통신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·12·29, 2022·9·5, 2023·3·6, 2023·11·1>

② 정책보좌, 정책개발, 공약사항 이행 및 대·내외 협력분야에 대하여 이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보좌관을 둘 수 있고, 정책보좌관은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. <신설 2022·9·5, 개정 2024·7·1>

[전문개정 2019·8·12]

제5조(자치행정국) ① 자치행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·3·6, 2024·7·1>

②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, 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체육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·3·6, 2024·7·1>

[제목개정 2024·7·1]

제6조(경제재정국) ① 경제재정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기업경제과장 및 일자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세정과장 및 세원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[전문개정 2024·7·1]

제7조(문화교육국) ① 문화교육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문화예술과장 및 관광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공원녹지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시민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, 도서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4·9·20>

[전문개정 2024·7·1]

제8조(복지국) ① 복지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복지정책과장·노인장애인과장·여성보육과장·청년아동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4·7·1]

제9조(도시주택국) ①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<개정 2023·3·6>

② 도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토지정보과장·주택과장·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0·12·29, 2022·9·5, 2023·3·6>

[제목개정 2023·3·6]

[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0조(안전건설국) ① 안전건설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<개정 2023·3·6>

②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, 건설과장 및 도로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교통정책

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차장등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〈개정 2021·12·28, 2023·3·6, 2024·7·1, 2024·9·20〉

[제목개정 2023·3·6]

[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1조(환경수자원국) ① 환경수자원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환경보호과장 및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수도과장 및 하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4·7·1]

제12조(첨단미래도시추진단) ①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첨단전략산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, 미래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[본조신설 2023·11·1]

[종전 제9조의2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3장 직속기관

제1절 보건소

제13조(소장의 직급) ①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「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서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

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「지역보건법 시행령」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

로 보하되,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「농·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중에서 보한다.

[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4조(하부조직) ① 보건소에 보건위생과, 건강증진과, 질병관리과를 둔다. <개정 2020·11·13, 2023·11·1>

② 보건위생과장, 건강증진과장, 질병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보건사무관·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한다. <개정 2020·11·13, 2023·11·1>

[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2절 농업기술센터

제15조(소장의 직급)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서기관·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2·9·5>

[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6조(하부조직)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, 축산과, 농업진흥과, 기술보급과, 연구개발과를 둔다.

② 삭제 <2023·12·13>

③ 농업정책과장 및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·지방농업사무관·지방수의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며, 농업진흥과장·기술보급과장 및 연구개발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. <개정 2023·12·13>

[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4장 읍·면·동 <개정 2024·7·1>

제17조(읍·면·동장의 직급) 「지방자치법」 제131조에 따라 읍·면·동에 두는 읍·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9·8·12, 2019·10·29, 2021·12·

28, 2022·9·5, 2022·9·30, 2023·3·6, 2024·9·20>

읍·면·동	직 위	직 급(직렬)	비고
장호원읍	읍 장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시설사무관	
부발읍	읍 장	행정·농업·녹지·시설사무관	
신둔면	면 장	행정·농업·보건·시설사무관	
백사면	면 장	행정·농업·녹지·시설사무관	
호법면	면 장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시설사무관	
마장면	면 장	행정·농업·시설사무관	
대월면	면 장	행정·공업·농업·시설사무관	
모가면	면 장	행정·농업·녹지·시설사무관	
설성면	면 장	행정·농업·환경사무관	
율 면	면 장	행정·농업·시설사무관	
창전동	동 장	행정·사회복지·시설사무관	
증포동	동 장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시설사무관	
중리동	동 장	행정·사회복지·농업·시설사무관	
관고동	동 장	행정·농업·간호·시설사무관	

[중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18조(하부조직) ① 읍·면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부읍·면장을 둔다.

② 부읍·면장은 6급 공무원으로 하고, 총무팀장 업무를 겸임토록 한다.

[중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5장 지방공무원 정원 <개정 2024·7·1>

제19조(직급·직렬별 정원) ① 이천시에 두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·직렬별정원은 별표 2와 같다. <개정 2020·5·8, 2021·11·5, 2024·7·1>

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5와 같다. <신설 2024·7·1>

[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제20조(정원의 배정) 정원관리기관별 보좌·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[중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·7·1]

부칙 <2019·1·1 규칙 제645호 전부개정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3과 같다.

제3조(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시 감축되는 기능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기능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제4조(적용례)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2에 별도(괄호)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.

제5조(다른 규칙의 폐지) 이 규칙 공포와 동시에 「이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」을 폐지한다.

제6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제2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국장, 복지문화국장, 산업환경국장, 안전건설국장, 도시주택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,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, 기획감사담당관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,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장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4조제1항,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각각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의 관련 국·실·과장 중 “산업환경국장”을 “기업환경국장”으로 하고, “기획감사담당관, 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며, “평생교육과장”을 “교육청소년과장”으로 하고, “사회복지과장, 문화관광과장”을 각각“노인장애인과장, 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하며,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하고, “여성가족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기획업무 규칙」 제4조제1항 및 제2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, 제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13조제1항, 제14조, 제17조제1항 및 제2항, 제18조, 제21조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각각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 중 “기획감사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호 중 “기획감사담당관, 농정과장”을 각각“기획예산담당관, 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2항 중 “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재무회계 규칙」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중 본청의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·징수과장”으로 하고, “예산공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며, 제8조, 제9조제1항, 제10조제1항 및 제2항, 제11조제1항 및 제2항, 제12조제1항, 제1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4조, 제15조제1항 및 제3항, 제16조, 제17조, 제1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19조제1항 및 제2항,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20조제1항 및 제3항, 제22조제3항,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26조, 제27조제1항 및 제2항, 제28조제1항 및 제2항, 제29조제1항 및 제2항, 제49조제1항 및 제2항, 제7조제2항, 제72조제1항 및 제2항, 별지 제14호서식,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“예산공보담당관”을 각각“기획예산담당관”으로 하고, 제9조제1항, 제11조제2항, 제25조제1항 및 제2항, 제27조제2항 및 제72조제2항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·징수과장”으로 하며, 제18조제1항, 제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30조제1항, 제32조, 제49조제1항, 제73조제4항, 제96조, 제123조제1항 및 제2항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징수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」 별지 1호서식 중 “세무과장”을 “세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이천시 농업산·학협동심의회 규칙」 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농정과장”을 “농업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⑪ 「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이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 중 “문화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예산공보담당관실”을 “홍보관광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⑭ 「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, 제21조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평생교육과”를 각각“교육청소년과”로 한다.

⑮ 「이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」 별지 제5호서식 지방세 서면 조사서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중 “세무과”를 “징수과”로 한다.

부칙 <2019·3·8 규칙 제647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제4조제1항,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1항 중 “기획예산담당관”을 “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하고, 같은 규칙 제9조제2항 및 제12조 중 “법무통계팀장”을 “법무규제개혁팀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, 제4조, 제5조제5항, 제6조, 제7조제3항 및 제4항, 제8조제1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민원봉사과장”으로 하고, 제5조제5항 중 “자치행정과”를 “민원봉사과”로 하며, 제10조 중 “자치행정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을 “종합민원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19·8·12 규칙 제65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9·10·29 규칙 제66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5·8 규칙 제673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7·28 규칙 제68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9·30 규칙 제684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20·11·13 규칙 제687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·12·29 규칙 제691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4항 중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중 복지문화분과의 “문화예술과장”을 “문예관광과장”으로 하고, 여성분과의 “여성보육과장”을 “여성정책과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홍보관광담당관실로”를 “소통홍보담당관으로”로 한다.

부칙 <2021·11·5 규칙 제72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소장의 개방형직위 지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.

부칙 <2021·12·28 규칙 제72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)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3과 같다.

부칙 <2022·3·7 규칙 제72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4·22 규칙 제729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8·11 규칙 제730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5 규칙 제735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2·9·30 규칙 제736호,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·3·6 규칙 제743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하고, “징수과장”을 “세원관리과장”으로 하며, 별표 2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 중 “체육지원센터” 및 “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”를 각각 삭제한다.

② 「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자치행정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이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제2조제2항 본문 중 “자치행정국장, 종합민원국장, 복지문화국장, 기업환경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”으로 하고, “소통홍보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복지문화국장”을 “경제문화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문예관광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중 “기업환경국장”을 “복지환경국장”으로, “교육청소년과장”을 “자치교육과장”으로,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, “문예관광과장”을 “문화예술과장”으로, “기업지원과장, 자원관리과장”을 “기업경제과장, 자원순환과장”으로, “도시계획과장, 교통행정과장”을 “도시과장, 교통정책과장”으로, “여성정책과장”을 “여성보육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3항 본문, 제4조, 제5조제5항, 제6조, 제7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조제3항, 제7조제4항 및 제8조제1항 중 “민원봉사과장”을 각각 “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하고, 제5조제5항 중 “민원봉사과”를 “민원여권과”로 하며, 제10조 중 “종합민원국장, 안전도시건설국장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도시주택국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시보 발행규칙」 제6조 중 “소통홍보담당관”을 “홍보담당관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제8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제1호, 제14조제2항제1호,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각각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 하고, 별표 중 “자치행정과장”을 “행정지원과장”으로, “민원봉사과장”을 “민원여권과장”으로 한다.

⑪ 「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, 제21조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교육청소년과”를 “자치교육과”로 한다.

⑫ 「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6조제1항 중 “문예관광과장”을 “관광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3·11·1 규칙 제760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이천시 조례·규칙심의회 운영 규칙」 제2조제2항 중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을 “행정자치국장, 복지환경국장, 경제문화국장, 도시주택국장, 안전건설국장, 첨단미래도시추진단장, 보건소장, 농업기술센터소장, 상하수도사업소장,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법무담당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2023·12·13 규칙 제762호>

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4·1 규칙 제769호>

이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7·1 규칙 제772호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「이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」 제15조제1항제1호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」 별표 1 본청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각각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하고, 별표 2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 중 “상하수도사업소”, “차량등록사업소”를 삭제한다.

③ 「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규칙」 제10조 중 “행정자치국장”을 “자치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이천시 도자기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경제문화국장”을 “문화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⑤ 「이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 별표 1 관련 국·실·과장 중 “복지환경국장”을 “환경수자원국장”으로, “자치교육과장”을 “시민교육지원과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이천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」 제8조제1항, 제12조, 제14조제1항제1호, 제14조제2항제1호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하고,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“행정지원과”를 각각 “자치행정과”으로 한다.

⑦ 「이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·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」 제3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」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하고, 별표 관수자 중 “행정지원과장”을 각각 “자치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이천시 평생학습조례 시행규칙」 제20조, 제21조,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“자치교육과”를 “시민교육지원과”로 한다.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부칙 <2024·9·20 규칙 제776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4·12·26 규칙 제781호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 <개정 2024. 12. 26>

소속기관별 사무분장(제3조 관련)

[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](#)

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

[별표 2] <개정 2024. 12. 26>

정원관리기관별 직급·직렬별 정원표

(제19조제1항 관련)

[여기를 클릭하시면 엑셀파일을 보시거나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.](#)

[별표 3] 삭제 <2023·3·6>

[별표 4] 삭제 <2021·11·5>

[별표 5] <개정 2024. 7. 1>

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

(제19조제2항 관련)

기관별	부 서	구 분		정 원	운용시한
		직급	직군		
본청	첨단미래도시추진단	4급	행정+기술	1명	2026년 10월 31일까지